

2020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

1. 제안이유

가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

구청장은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 할 수 있다.

- 1)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
- 2)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

나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6조

- 1) 구청장이 제10조 각 호의 각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계획과 결과 등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위 규정에 따라 2020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결과에 대해 보고하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평가 대상 :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

나. 평가 내용

- 1) 금천문화재단 2020년(2019년도 실적) 경영평가
- 2) 금천문화재단 2020년(2019년도 실적) 대표이사 성과평가
 - 1기 대표이사(정재왈) : 2019. 1. 1. ~ 2019. 6. 30.
 - 2기 대표이사(이용진) : 2019. 8. 21. ~ 2019. 12. 31.

다. 평가 방법 : 외부 전문기관 용역(수의계약)

- 1) 계약금액 : 14,148천원
- 2) 용역기간 : 2020. 2. 14. ~ 5. 13.(3개월)

3. 그간 추진 일정

2020. 1월	2020. 2월	2020. 3~4월	2020. 5월
<p>1 시행계획 수립</p>	<p>2 평가용역 계약 3 용역착수보고서 제출 4 경영실적보고서 및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5 경영평가 설명회</p>	<p>6 현장·대면실사/ 고객만족도 조사 및 이행실적 평가 ※ 중간점검 및 평가대상 기관 이의신청 수렴</p>	<p>7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및 평가 확정 8 결과통보 및 활용 9 환류</p>

4. 경영 및 성과평가 결과

가. 기관 경영평가 : 총 5등급(S~D)중 A등급

1) 기관 경영평가

분야	영역	가중치	득점	비고
관리 영역(50)	리더십·전략	15	12.9	• 리더십 지표 • 전략 지표
	경영시스템	25	22.64	• 조직·인사관리 지표 • 재무·예산관리 지표
	정책 준수	10	9.6	• 정책 준수 지표 • 사회적가치 준수 지표
사업 성과(50)	사업지표	50	43.05	• 지역문화진흥 지표
계		100	88.19	

2) 평가등급표상 득점 결과 : A

구 분	S	A	B	C	D
평 점	90점 이상	90점 미만~ 80점 이상	80점 미만~ 70점 이상	70점 미만~ 60점 이상	60점 미만

나. 기관장 성과평가 : 총 5등급(S~F)중 A등급

1) 기관장 성과평가(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)

평가구분	배점	점수
1. 경영평가 이행실적	60	51.9
2.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	40	34.9
합계		86.8

2) 평가등급표상 득점 결과 : A

구분	S	A	B	C	F
평 점	90점 이상	85점 이상~ 90점 미만	80점 이상~ 85점 미만	80점 미만~ 70점 이상	70점 미만

다. 대표이사 성과계약서 평과 결과

1) 평가기준

- (재)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연봉(성과)계약서(안) 성과평가 관련 제12조 기본연봉(별표2) 및 제13조 성과급(별표3)

2) 평가결과

-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기준 : A등급
- 기본연봉 인상률 : 5%
- 성과급 지급률 : 190%

5. 참고사항

가. 2020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지표(요약표) - 붙임1

나. 2020년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성과평가 지표(요약표) - 붙임2

다. 관계법령 - 붙임3

- 1)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- 2)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

[붙임1]

2020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지표(안)

영역	평가부문		평가지표		배점	지표성격
경영 성과 (100)	(1) 리더십 및 전략 (15)	리더십	①	경영층 리더십 전문성	5	정성
			②	고객서비스 및 윤리경영		
		전략	①	중장기 및 주요사업 계획	5	정성
		고객만족도	①	이해관계자 공유 활동실적	5	정량/정성
			②	고객만족도		
	(2) 경영 시스템 (25)	조직 및 인사관리 적정성	①	조직관리의 적정성	8	정성
			②	인사관리의 적정성		
			③	성과관리운영의 적정성		
		재무 예산관리의 적정성	①	재정계획의 적정성	8	정성
			②	예산운용 및 집행의 적정성		
		관리지표	①	임직원교육 실적	9	정량
			②	자체수입률		
			③	일반관리비 충당율		
			④	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		
			⑤	조달계약 실적		
	⑥	경영공시 및 통합 공시 준수				
	(3) 정책 준수 (10)	출연기관 정책준수	①	인건비 인상률 준수	6	정량
			②	경영평가 성과급 지급		
			③	블라인드 채용		
			④	유사행정 정비추진 실적		정량/정성
			⑤	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		
		사회적가치 준수	①	금천구 정책준수	4	정성
			②	지역사회 공헌		정량/정성
	(4) 고유사업지표 (50)		①	사업구성의 적합성 및 타당성	6	정성
			②	사업추진체계의 적합성 및 타당성	5	정량/정성
			③	공연장 및 전시장 운영 성과	6	
			④	공연 및 전시사업 활성화	6	
			⑤	도서관 사업 운영 실적	6	정성
			⑥	독서문화 활성화	6	정량/정성
			⑦	문화예술 및 독서문화 교육사업 활성화	5	
⑧			홍보활동 성과	4		
⑨			시설 및 무대 운영관리의 적정성	3		
⑩			안전대책의 적정성	3		

[붙임2]

2020년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성과평가지표(안)

영역	평가부문		평가지표		배점	지표성격	
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(40)	기관장 역량	(1) 책임철학 및 윤리구현	①	경영철학의 설정과 실천여부	16	정성	
			②	구정 목표 및 방향의 이해도			
			③	윤리수준 제고			
			④	거버넌스 관리			
		(2) 조직관리	①	투명한 인사관리	12		
			②	조직역량 강화노력			
			③	노사화합을 위한 노력 및 성공			
			④	내부감사 시스템 구축 및 운영			
		(3) 사업관리	①	주요 사업관리의 적절성	12		
			②	기관 자립화를 위한 노력도			
			③	신규사업 발굴 노력 시설 및 안전관리			
		소 계					40
	경영성과 (60)	(1) 금천문화재단 경영성과 ※ 금천문화재단 기관 경영평가 결과 반영				60	
합 계					100		

※ 상기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지표는 2019년 실시한, 2020년 경영평가 및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편람,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편람을 토대로 설정한 것이며, 용역 착수 후 지표세부내용(지표별 정량 혹은 정성평가, 배점조정 등)은 변경될 수 있음.

관 계 법 령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, 제28조

제11조(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장(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)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,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28조(경영실적의 평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2.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

③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/ 2. 조직·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

3. 전년도 결산서 / 4. 최근 3년간 경영실적

5.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

6.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, 제16조

제10조(평가의 종류) 구청장은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.

1.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

2.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

3.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

제16조(평가의 활용) ① 구청장이 제10조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계획과 결과 등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0조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·출연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.